

# 인천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제외업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기업의 참여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도  
아래 사유 발생 시 지원종료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일반 유흥 주점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제2조(적용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단서에서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1. 6. 8.>

1. 삭제<2021. 6. 8.>
2. 일반유흥 주점업
3. 무도유흥 주점업
4. 기타 주점업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6. 무도장 운영업

[전문개정 2013. 5. 22.]

②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 단,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은 가능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沐浴場業), 이용업(理容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10. 7. 23.]

### ③ ‘청소년 유해업소’로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업종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것
-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것
-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 11) 「경륜·경정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것

④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 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3. “사행기구 제조업”이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관(機板), 용구(用具)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개조하거나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사행기구 판매업”이란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수입(輸入)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투전기”란 동전·지폐 또는 그 대용품(代用品)을 넣으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물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기기를 말한다.
  6.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